



정성을 다해
효도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도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이 영 자

TEL. 061-682-58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효도재가노인복지센터

1. 계약 목적

서비스 이용자 (이하 ‘수급자’ 라 함)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보다 나은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계약시 구비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2)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사본 1부
- 3) 신분증 (필요시)
- 4) 의료 급여증명서 또는 의료 급여증 사본(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부

3. 계약 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을 둔다

- 1) 기관과 수급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4)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 5)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6)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시설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6)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기초로 한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5.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 3)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해야 한다.
- 5)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 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2026년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은 [별지]와 같다.
- 2) 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5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행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SNS로 통보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통보일자는 변동될 수 있다.
- 3)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4) 비용의 부담은 기관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5) 이용한도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용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6)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발행 또는 원본을 스캔하여 SNS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 7) 수급자의 외출 및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④ 대상자의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9. 계약해지

-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4)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5)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6)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7)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8)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9)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10)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성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1)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12)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별지]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2026년)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인상률	8.95%	11.89%	2.86%	2.85%	2.71%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6년)

방문 당 시간	2025년		2026년			
	수가	본인부담 15%	수가	본인부담 15%	본인부담 9%	본인부담 6%
30분	16,940	2,541	17,450	2,618	1,571원	1,047원
60분	24,580	3,687	25,320	3,798	2,279원	1,519원
90분	33,120	4,968	34,120	5,118	3,071원	2,047원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3,909원	2,606원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4,558원	3,038원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5,132원	3,421원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5,718원	3,812원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6,307원	4,205원

■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방문요양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0%